

충남형 농어민 정년연금제 도입 방안 기초연구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본 연구는 충청도 차원에서 소득안정망 확보를 통해 고령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청년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충남형 농어민 정년연금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개념 및 유사 사례 분석
3. 쟁점 분석
4. 기본 방향 및 시행방안
5. 결론 및 제언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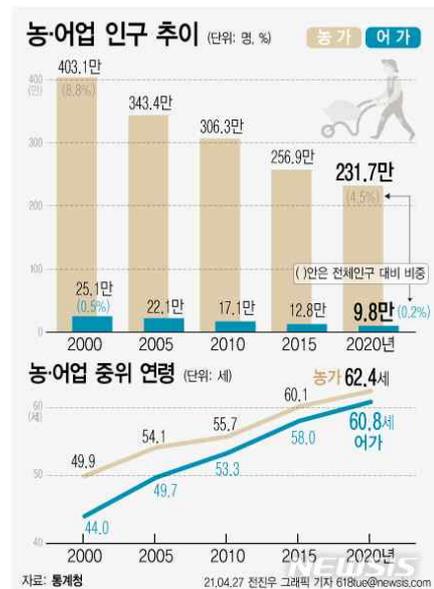
- 현재 충남을 비롯해 우리나라 농어촌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는 감소되고 있지만 신규농업인은 유입되지 못해 '지역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 청년 혹은 중장년층이 영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농지 부족 등으로 농어촌으로 인구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신규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의 기회를 제공해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 도입 방안을 제시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충청도 자체적으로 농지연금과 같은 연금제도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실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와 연계해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를 실시함
 - 셋째,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는 정부의 지급단가에 면적별로 20~100% 추가 지급해 정책적 성과를 제고함
 - 마지막으로, 농어민정년연금제라는 새로운 제도에 농어민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함

0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 농어촌은 도시중심의 발전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로 인해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심각한 상태임

- 지난 20년 동안의 농어가 인구 추이를 보면, 농가인구는 2000년 403.1만 명(전체 인구의 8.8%)에서 2020년 231.7만 명(전체 인구의 4.5%)으로 감소함
- 같은 기간 어업인구 25.1만 명(전체 인구의 0.5%)에서 9.8만 명(전체 인구의 0.2%)로 감소함. 농가인구의 중위 연령도 2000년 49.9세에서 2020년 62.4세로 12.5세나 높아짐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 가구주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56%에 달함. 반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의 비율은 1.2%에 불과해 농가 내 연령층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그림 1] 농어가 인구 변화 추이

● 지난 10년 동안 전체 농가인구 대비 충남의 농가인구 비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기준 전국 농가인구는 306.2만 명에서 2021년에는 252.1만 명으로 54.1만 명이 감소함. 같은 기간 충남은 39.4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14.2만

명 감소함

- 전체 농가인구 대비 충남의 농가인구는 2010년 12.9%에서 2015년 12.0%, 2021년 11.4%로 갈수록 감소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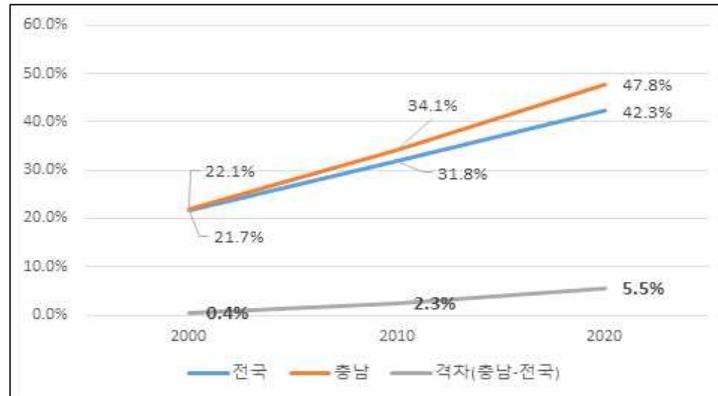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그림 2] 전체 대비 충남의 농가인구 비율 추이

- 지난 20년 동안 전체 농가인구 고령화 비율 대비 충남의 농가인구 고령화 비율은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추세임
 - 2000년 전국 농가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21.7%인데 반해 충남은 22.1%로 0.4%p 차이가 남. 이후 2010년에는 전국 대비 충남은 각각 31.8%, 34.1%로 2.3%p 차이가 나며, 2020년에는 각각 42.3%, 47.8%로 5.5%p 차이가 남
 - 충남도 농가인구 고령화 추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가고 있으며 그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전국 대비 충남 농가경영주 연령은 70세를 기준은 젊은층은 적고 노령층은 많은 형태를 보이며, 특히 80대 이상에서 비율이 높음
 - 2020년 기준 연령별 농가경영주 현황을 보면, 70세 이하에서는 전국이 높고 70세 이상에서는 충남이 높은 형태를 보임
 - 우선 40대 이하의 농가경영주 비율을 보면, 전국은 1.2%인 반면, 충남은 1.0%로 충남이 0.2%p 적음. 40대, 50대, 60대에서도 충남은 각각 1.1%p,

2.4%p, 1.0%p 적음

- 반면, 70대 농가경영주 비율에서 충남은 전국에 비해 1.7%p, 80세 이상에서는 3.0%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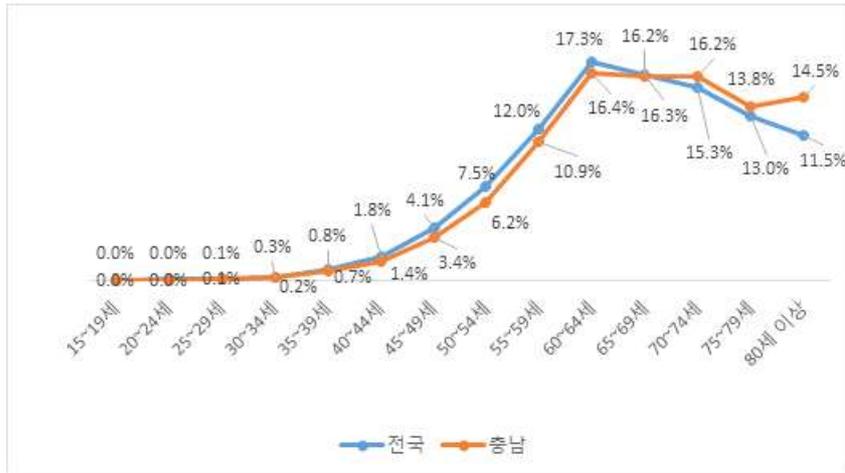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그림 3] 전체 대비 충남의 농가인구 고령화 비율 추이

[표 1] 농가경영주 연령별 농가수(2020)

구분	전국		충남	
	농가경영주	비율	농가경영주	비율
15~19세	9	0.0%	2	0.0%
20~24세	180	0.0%	16	0.0%
25~29세	815	0.1%	87	0.1%
30~34세	2,578	0.3%	253	0.2%
35~39세	8,187	0.8%	829	0.7%
40~44세	18,484	1.8%	1,740	1.4%
45~49세	42,315	4.1%	4,146	3.4%
50~54세	76,628	7.5%	7,479	6.2%
55~59세	123,119	12.0%	13,239	10.9%
60~64세	177,352	17.3%	19,913	16.4%
65~69세	167,149	16.3%	19,649	16.2%
70~74세	157,354	15.3%	19,583	16.2%
75~79세	133,520	13.0%	16,697	13.8%
80세 이상	118,363	11.5%	17,544	14.5%
합계	1,026,053	100.0%	121,177	100.0%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그림 4] 연령별 농가경영주 비율(2020)

● 충남도내 70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대부분 1ha 이하에서 분포함

- 충남도 70세 이상 농가경영주의 경작규모(2020)별 비율을 보면, 0.1ha미만은 0.4%, 0.5ha 미만은 18.8%, 1.0ha 미만은 30.7%를 차지하고 있음. 즉 1ha 미만 농가 가운데 70대 이상 농가는 30.7%인 것으로 나타남
- 70세 이상 농가의 경지규모별 비율을 보면, 0.1ha 미만은 0.9%, 0.5ha미만은 42.4%, 1.0ha 미만 농가는 전체의 69.2%로 나타남. 즉, 70세 이상 농가의 약 70%는 1ha 미만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충남 70세 이상 농가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2020)

구분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경영주 합계	전체 농가 (121,177) 중 비율	70세 이상 농가(53,824) 중 비율
	70~74 세	75~79 세	80세 이상			
0.1ha미만(가구)	135	134	194	463	0.4%	0.9%
0.1~0.2 (가구)	2,588	2,255	2,788	7,631	6.3%	14.2%
0.2~0.3 (가구)	1,669	1,504	1,728	4,901	4.0%	9.1%
0.3~0.5 (가구)	3,265	3,071	3,441	9,777	8.1%	18.2%
0.5~0.7 (가구)	2,364	2,160	2,415	6,939	5.7%	12.9%
0.7~1.0 (가구)	2,519	2,373	2,569	7,461	6.2%	13.9%
1.0~1.5 (가구)	2,602	2,226	2,153	6,981	5.8%	13.0%

1.5~2.0 (가구)	1,498	1,185	1,020	3,703	3.1%	6.9%
2.0~2.5 (가구)	795	594	441	1,830	1.5%	3.4%
2.5~3.0 (가구)	546	399	260	1,205	1.0%	2.2%
3.0~4.0 (가구)	701	350	253	1,304	1.1%	2.4%
4.0~5.0 (가구)	317	165	106	588	0.5%	1.1%
5.0~6.0 (가구)	182	81	55	318	0.3%	0.6%
6.0~7.0 (가구)	129	76	48	253	0.2%	0.5%
7.0~10.0 (가구)	157	73	40	270	0.2%	0.5%
10.0ha이상(가구)	116	51	33	200	0.2%	0.4%
합계	19,583	16,697	17,544	53,824	44.4%	100.0%

자료: 농업총조사(2020)

● 고령임에도 농사를 계속해서 짓는 이유는 그동안의 관행, 생계 유지, 추가 소득, 취미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음

- 고령임에도 영농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 1) 평생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임
- * 2) 어느 정도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 3) 생계 이상의 더 많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 4) 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면서 자급의 삶을 살기 위해서

- 1)번의 경우: 소득과 크게 상관없이 평생 농사를 지어왔고 딱히 다른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음

- 2)번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생계를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지음

- 3)번의 경우: 기존의 농사 소득에 더해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지음

- 4)번의 경우: 주로 도시의 은퇴자들이 퇴직 후 귀촌해 전원생활을 하면서 농산물을 자급하기 위해 농사를 지음

● 고령임에도 생계를 위한 영농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정적인 복지체계의 부족 때문임

- 고령농이 농사를 계속 짓는 이유는 평생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농사 외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해서 지음

- 현재 고령의 농어민에게는 국민기초연금, 국민연금(농어민연금), 농업직불금이 있고 지역에 따라 농어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고령의 농어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
- 현재 농어촌 내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고령의 농어민이 농지를 기반한 영농을 지속하는 한 지역 내 새로운 인구 유입은 불가능함
 -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 지역은 이미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반대로 농촌에는 청년과 귀농인이 농촌에 들어가고 싶어 도 농지 등 영농기반이 없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음
 - 이처럼 연령 간 병목 현상이 가중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의 필요성을 구명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도 차원에서 고령 농어민의 소득안정망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청년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농어민 정년연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 시 그 기본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02 개념 및 유사 사례 분석

1. 개념 정의

1) 정년 관련 용어

● 정년

- 국가·지방공무원 그 밖의 기관의 직원이 법정연령에 달함으로써 그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연령(법률용어사전)

● 정년제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시사상식사전)
- 퇴직하는 연령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직종, 업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시사상식사전)

2) 연금 관련 용어

● 연금

- 피용자(被傭者)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 혹은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마다 계속해 지급받는 급여(행정학사전)

● 연금제도

- 폐질(廢疾)·노령·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두산백과)
-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두산백과)

●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시사상식사전)
-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그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음(시사상식사전)
- 2021년 기준 농촌지역 주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 그중 농어가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7%, 비농어가는 72.7%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보면, 농어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률은 70.1%, 미가입률은 2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농촌지역 주민의 공적연금 가입 현황(2021)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합계(3,999)		71.8	3.4	0.3	0.4	25.5
읍/면	읍(1,926)	76.5	4.5	0.3	0.1	20.8
	면(2,073)	67.4	2.3	0.2	0.7	29.9
영농여부	농어가(1,169)	69.7	2.7	0.2	0.3	27.5
	비농어가(2,830)	72.7	3.7	0.3	0.5	24.7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2.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보고서

- 농촌지역 주민의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가 62.1%로 가장 많았고, '만60세 경과'가 21.4%로 나타남. 농어가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가 66.1%로 비농어가 60.2%에 비해 5.9%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농촌지역 주민의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2021)

단위: %, 명

구분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노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만60세 경과	기타
합계(1,018)		12.9	62.1	3.4	21.4	0.3
읍/면	읍(399)	14.5	71.0	1.7	12.6	0.2
	면(619)	11.8	56.3	4.5	27.1	0.3
영농여부	농어가(321)	10.2	66.1	4.7	18.9	0.1
	비농어가(697)	14.1	60.2	2.8	22.6	0.3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2.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보고서

● 기초연금

-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시사상식사전)
-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됨(시사상식사전)
-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초연금을 개인당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합산으로 인한 감소율(20%)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2. 유사 사례 분석

1) 농어민연금제

● 정의

-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금제도(두산백과)

- 농어민연금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제도라기보다는 국민연금제도라는 틀 속에 농어민에 대해서는 특례를 통해 가입 대상자의 확대, 연금보험료의 국가보조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의미함

● 법적 근거

- 국민연금법 제132조 부칙 제5조(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 중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당시 농어민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 대상

-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 농어민과 군 지역 자영업자들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면 60세 이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 제도의 특징은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고령 농어민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함(두산백과)

● 연금보험료

- 연금보험료는 1995년 7월에서 2000년 6월까지의 일제 신고 시 자신이 신고한 표준소득등급(45등급)에 의해 결정된 소득월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함. 2000년 7월에서 2005년 6월까지의 표준소득월액의 6%, 2005년 이후부터는 9%를 적용함. 다만 자영업자를 제외한 순수 농어민 가입자의 경우 매월 2,200원씩 국고에서 지원됨(두산백과)
- 또한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는 달리 연금 보험료율이 낮고 국고보조 혜택이 큰 점을 감안하여, 가입대상이라도 기타소득이 농, 축, 임, 수산업 소득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격이 없음(두산백과)
- 국민연금법 제132조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2) 농지연금¹⁾

● 정의

-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 추진 방향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

●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 가입 조건

- 가입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신청연도 말일 기준) * 2022년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 완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승계형 가입 가능
- 영농 경력: 영농 경력 5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 농지 조건: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농지연금의 종류

- 농지연금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음. 종신형은 일시인출형, 전후후박형, 종신통액형이 있고 기간형에는 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음

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10>

[표 5] 농지연금의 종류

종류	유형	내용
종신형	일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방식
	전후후박형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종신정액형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기간형	경영이양형 (5년, 10년, 15년)	지급기간 만료 후 공사에 담보 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 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기간정액형 (5년, 10년, 15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똑똑한 노후 이야기: 든든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노후설계, 농지연금

●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

- 가입자의 연령, 농지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 담보농지 평가가격: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
- 종신정액형 월지급금의 예시는 다음 [표 6]과 같음

[표 6] 종신정액형 농지연금 월지급금 예시(단위 만원)

구분	농지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연령					
65세	38	77	115	153	192
70세	43	86	129	173	216
75세	49	99	148	197	24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똑똑한 노후 이야기: 든든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노후설계, 농지연금

● 농지연금의 장점

-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 [표 7]과 같음. 현재 농지연금 가입자의 92%가 농지 연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농지연금의 장점

장점	내용
평생 연금 보장	농지연금은 평생 보장되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까지 평생 받을 수 있음(단, 배우자 승계형 가입에 한함)
국가가 보증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합리적인 상속	수급자 사망으로 농지 처분정산 시 정산금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려드리고 부족해도 청구하지 않음
세제 혜택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농지은행 부담 연금수급 시: 6억 원 이하까지 담보 농지의 재산세 감면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최저생계비 한도)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로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급이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똑똑한 노후 이야기: 든든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노후설계, 농지연금

● 지역별 농지연금 가입건수

- 2021년 말 기준 지역별 농지연금 가입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4,63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북이 2,723건, 충남 2,578건으로 나타남

[표 8] 지역별 농지연금 가입건수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입	19,178	4,635	1,177	1,087	2,578	2,284	2,439	2,723	2,070	185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담당

3) 경영이양직불금²⁾

● 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2)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 농식품사업 안내서비스(<https://uni.agrix.go.kr/>),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 참고(<https://www.fbo.or.kr/fsle/sell/Intro.do?menuId=030010>)

● 사업 내용

- 65~74세 농업인이 전업·후계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

● 지원 자격 및 요건

- 65~7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경영이양한 경우 보조금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2년 예산 : 26,660백만원(국비 26,660백만원)

● 지급단가 및 지급액 산정

- 지급단가: (매도) ha당 330만원/연, (임대) ha당 250만원/연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지급상한 및 지급 방법

- 지급상한 : 4ha(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을 합산)
- 지급방법 : 신청연령에 따라 2~10년(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분할지급)

[표 9] 경영이양직불 연령별 지급 기간

연령	66세이하	67세	68세	69세	70세	71세	72세	73세	74세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 경영이양직불제 개편

-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경영이양직불금 접수를 중단하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경영이양직불제의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 개편안의 주요 목적은 고령농업인에게 소득 보장을 통한 은퇴를 유도하고 그들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임
- 농식품부 경영이양직불제의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0]과 같음

[표 10]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이양직불 개편안

구분	개편 전 (경영이양직불)	개편 후(안)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목적	· 고령농 소득안정, 영농규모화 촉진	·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소득보장, 청년농 농지공급으로 세대 전환
가입 요건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작동 - 단, 기존 경영이양직불 수혜자 제외
가입 연령	· 65세 이상, 74세 이하	· 70세 이상, 79세 이하
이양 대상	· 64세 이하 전업농, 50세 이하 농업인	· 청년농 우선 - 순위: ①청년창업형 후계농, ② 2030세대, ③후계농, ④귀농인, ⑤ 전업농, ⑥일반농
이양 방법	· 매도, 임대	· 매도 · 조건부임대 -임대 종료 후 매도(매도조건부 임대)
지급 농지	· 진흥지역 우선, 경지정리 비진흥 지역 포함	· 작동
신청 면적	· 상한 4ha 이하, 하한 없음	· 작동
경작 허용면적	· 3,000㎡ 이하(기본형 공익직불금 허용)	· 1,000㎡ 미만(기본형 공익직불금 제외)
지급 단가	· 면적(ha)당 임대 월 21만원, 매도 27.5만원	· 농가당 + 면적당 지급 - 임대: 농가당 월 20만원+면적당 월 20만원 - 매도: 농가당 월 20만원+면적당 월 40만원
지급 기한	· 75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 66세 이하(10년)~74세(2년)	· 84세까지(가입 후 최장 10년) - 75세 이하(10년)~79세(6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미발표)

4) 농어민수당(충남도)³⁾

● 목적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급 대상

-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충청남도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 기준 미만인 자
-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급 금액 및 방법

-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
 - * 2020년, 2021년 농어가당 80만 원, 2022년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개인당 45만 원 지급
- 농어민수당은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함

5) 농민기본소득(경기도)⁴⁾

● 목적

- 경기도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2020. 3. 10 제정)

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2021. 5. 20 제정)

● 지급 대상 및 방식

- 경기도 농민 개인
-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의 사정에 따라 그 지급 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 재정 지원 등

- 도지사는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도지사는 재정지원 대상 시·군과 시군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2021년부터 농민 개인당 60만 원 지급

6)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목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 지급 대상 및 조건

-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 지원제외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근로자 월 임금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 지원금(도비50% : 시·군비50%) = 근로자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두루누리 지원금

03 쟁점 분석

1. 농어민 정년 기준

- 농어민정년제로 규정할 경우 농어민 정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
 - 보통 공무원연금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기타 직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농어민은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임.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민이기 때문에 농어민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할 수는 있음
 - 하지만 농어민은 공무원이나 정규직처럼 월급이 나오는 직군이 아니고 연금이 나오더라도 턱없이 낮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정규직 직군과 같은 정년 연령은 큰 의미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정년제를 실시할 경우 정년 연령을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 2020년 국회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정년)은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됨
 - 2019년 대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농업계에서도 농업인 정년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하지만 현행법(농어업인삶의질법)은 농업인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정년을 65세로 봤음

- 그러다 2020년 2월 11일 국회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정년)은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됨
- 2020년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업인 정년은 70세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약칭: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2. 11.>

2. 농어민 정년 형태

- 농어민의 정년 형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 농어민이 정년을 했다는 것은 농어업에서 은퇴를 의미하지만 대다수의 농어민은 완전한 형태의 은퇴를 띠지 않는 경우가 많음. 다시 말해 은퇴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약간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음
 - 일반적으로 농어업인의 정년은 법적으로 농어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완료한다고 볼 수 있음.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완료한다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다는 의미임
- 농민이 정년을 하더라도 1000㎡ 이하 농지 경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1000㎡ 이상의 농지 소유이기 때

문에 이 이하의 농지 경작은 농업인의 정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반대로 1000㎡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농업에서 정년, 즉 은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1000㎡ 이하 경작은 수익 목적보다는 자금과 취미를 위한 농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음

3. 농어민연금의 성격

1) 연금의 종류

- 일반적으로 연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고 정년 혹은 퇴직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함
 -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인연금 등이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일반적인 경우 이외 정부는 연금 가입이 어려운 특수한 계층, 즉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함
 -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이에 해당됨
 -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는 이외에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자에게 정부차원의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함
 - 예를 들어, 보훈급여·수당,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수당,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자 연금 등
- 민간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산을 담보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 받음
 - 예를 들어,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이에 해당함

2) 농어민연금의 성격

- 첫째, 농어민연금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생산에 대한 보상적 성격에 가까움
 - 현재 충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농어민연금은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불입해 정년 후 지급받는 불입형 연금이라기보다는 농어민의 국가·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형 연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서 농어업인의 국가·사회적 기여라함은 농어민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은퇴 연령의 농어민은 장기간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생산과 증진에 기여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 둘째, 농어민연금은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위한 사회 보장적 성격도 있음
 - 농어민연금은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장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농어민은 농어업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에 비해 낮은 소득, 열악한 환경, 미흡한 복지체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음
 - 따라서 농어민연금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농어민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연금을 통해 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자는 뜻도 지님

- 셋째, 농어민연금은 농지 처분 등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적 성격을 지님
 - 농어민연금은 농어민이 농어업에서의 은퇴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농어민이 농어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해온 농지 등 자산을 처분(임대 또는 매도)해야 함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의 이양을 조건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민연금제도는 농지연금제도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어민연금의 액수 정도와 조건에 따라 농어민은 이 제도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것임. 이 때문에 이 제도의 성패는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음

04 기본방향 및 시행 방안

1. 기본 방향

-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 ‘농어업인의삶의질법’ 상 농어업인의 정년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농어민정년연금제의 기준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규정함
- 자유선택의 원칙으로 실시
 - 농어민정년연금제는 정년농어민에 대한 정부의 강제 혹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 정년농어민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적 가입
 - 농어민정년연금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령농어민을 영농에서 강제 은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음.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농어민정년연금제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혜택 제시 필요
 - 농어민정년연금제에 가입할 경우 농어업 종사 시 가졌던 혜택, 예를 들어, 농업직불금, 농어민수당(농민기본소득), 농협조합원으로서의 혜택, 기타 혜택 등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보완한 혜택 제시 필요
 - 특히 농어민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커 농지 이양에 극히 소극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손실에 비한 충분한 혜택이 제시되어야 함

● 농지연금·경영이양직불과 결부해 실시

- 농어민정년연금제의 목적은 장기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농어민에게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어업권)를 신규 농어민에게 이양함으로써 농어가 내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농지연금과 결부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연금·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제도와 시스템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가칭)는 개념상으로는 농지연금제도에 가까우나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담보로 한 지급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가칭)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토대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경영이양 농지 규모에 따른 차이를 두되 가급적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배려 필요

- 경영이양직불금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농가는 더 많은 직불금을 수령하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수령액이 적음
-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는 소농이고 충남의 경우 1ha 미만 농가가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농이 경영이양을 통한 은퇴를 할 경우 농지 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다소 보완적 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산 범위 내 한정해 실시

- 농어민정년연금제는 정년농어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모든 정년농어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음. 따라서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음

2. 시행 방안

(1) 기본 방안

● 가입 요건

- 합계 영농기간이 10년 이상
- 단, 기존 경영이양직불 수혜자 제외

● 가입 연령 및 지급 대상

- 가입 연령: 70~79세
- 지급 대상: 85세 이하(가입 후 최장 10년)

● 농지이양 대상

- 청년농 우선
- 기타 순서는 농식품부 농지이양은퇴직불(안) 참조

● 이양 방법

- 매도
- 조건부임대: 임대종료 후 매도 * 이양 방법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다름

● 지급 농지

- 진흥지역 우선,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포함

● 상한 면적

- 상한 면적은 4ha, 하한 면적은 없음

● 경작허용 면적

- 1,000㎡ 미만(기본형 공익직불금 제외)

- 법률상으로 0.1ha 미만이라고 해도 다른 농업인 요건(시설 330㎡, 과수·채소 660㎡ 등) 충족 시 농업인(농업경영체) 자격 유지 가능함
- 하지만 본 제도의 취지가 농어민의 법적 은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0.1ha 미만 농가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본 정책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2) 지급 방안

● 지급 방식

- 기본연금(면적구간별) + 면적연금(농식품부 개편안 수준) 지원
- 단, 정부 ‘농지이양은퇴직불’(‘23년 신설 예정)을 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

● 지급 금액

- 정부의 경영이양직불금 개편안(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참고해 면적구간별 기본연금 + 면적연금(국가 수준) 지원
- 정부 개편안은 임대의 경우 농가당 월 20만원+면적당 월 20만원, 매도의 경우 농가당 월 20만원+면적당 월 40만원임
- 충남도 농어민 정년연금제 지급단가는 정부 지급액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은 약 50~100% 정도로 상향하고 면적연금은 정부안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함
- 또한 기본연금도 면적과 연동해 금액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 면적별 농민은퇴연금의 세부 근거안은 다음 [표 11]과 같음

[표 11] 면적별 농민은퇴연금의 세부 근거안

단위: 천원

구분	면적 직불금	영농기대 수익	농협지원	농어민수당	각종수당	기타혜택	합계
0.5ha	1,200	3,000	300	900	300	300	6,000
1ha	2,050	6,000	500	900	500	500	10,450
2ha	4,100	12,000	800	900	800	800	19,400
3ha	6,070	18,000	1,100	900	1,100	1,100	28,272
4ha	8,040	24,000	1,400	900	1,400	1,400	37,140

5ha	8,040	24,000	1,400	900	1,400	1,400	37,140
6ha	8,040	24,000	1,400	900	1,400	1,400	37,140
7ha	8,040	24,000	1,400	900	1,400	1,400	37,140

주: 1) 면적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2022) 중 논·밭 진흥지역을 기준으로 책정함 5)

- 2) 영농기대수익은 영농활동 시 연간 1ha 기준 480~720만원(월 40~60)만원의 중간 값이 5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함(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양 은퇴직불 개편(안) 내부 자료). 기대수익은 농업순수익과 농업보조금 수익으로 구성됨. 기대수익에 농업보조금 수익이 포함돼서 면적직불금과 중복성이 있지만 여기에는 보조사업 등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포함함.
- 3) 농협지원은 농협회원의 혜택을 연간 기준으로 추정한 액수임
- 4) 농어민수당은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수당 지침 중 2인 기준으로 설정함(현재 1인당 45만원으로 책정됨)
- 5) 각종 수당은 농협 외 기관에서 농어민에 대한 혜택을 추정한 액수임(예, 건강보험료 감면 등)
- 6) 기타 혜택은 농어민이기 때문에 얻는 혜택을 추정한 액수임(예, 자녀 학비보조 등)

● 지급 단가: 매도의 경우

- 면적별 농민은퇴연금의 세부 근거안을 바탕으로 은퇴농가가 농지를 매도 시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지급모델은 다음 [표 13]와 같음
- 예를 들어 1ha 농민이 은퇴하면서 농지를 매도할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간 52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지만 충남도안에서는 연간 1,025만원의 연금을 수령해 충남도의 농어민연금은 정부안보다 거의 2배에 달함

5) 정부의 면적직접직불금 지급 단가는 다음 [표 12]와 같음

[표 12] 면적직접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면적직불금		
	2ha이하 (1구간)	2ha초과~6ha이하 (2구간)	6ha초과~ (3구간)
논·밭 진흥지역(a)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b)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c)	134	117	100

[표 13]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 지급모델: 매도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정부안(농지이양은퇴직불금)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안)			정부안 차액지원
	계	기본	면적	계	기본	면적	
0.5ha	4,800	2,400	2,400	6,000	3,600	2,400	1,200
1ha	5,200	2,400	4,800	10,450	5,650	4,800	5,250
2ha	12,000	2,400	9,600	19,400	9,800	9,600	7,400
3ha	16,800	2,400	14,400	28,270	13,870	14,400	11,470
4ha	21,600	2,400	19,200	37,140	17,940	19,200	15,540
5ha	21,600	2,400	19,200	37,140	17,940	19,200	15,540
6ha	21,600	2,400	19,200	37,140	17,940	19,200	15,540
7ha	21,600	2,400	19,200	37,140	17,940	19,200	15,540

주: 농어민정년연금제의 상한선은 4ha이기 때문에 4ha 이상 농가에 대한 연금은 동일함

●지급 단가: 임대외의 경우

- 면적별 농민은퇴연금의 세부 근거안을 바탕으로 은퇴농가가 농지를 임대 시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의 지급모델은 다음 [표 14]와 같음
- 예를 들어 1ha 농민이 은퇴하면서 농지를 임대할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간 48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지만 충남도안에서는 연간 7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해 충남도의 농어민연금은 정부안보다 거의 1.5배에 달함

[표 14]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 지급모델: 임대외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정부안(농지이양은퇴직불금)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안)			정부안 차액지원
	계	기본	면적	계	기본	면적	
0.5ha	3,600	2,400	1,200	4,800	3,600	1,200	1,200
1ha	4,800	2,400	2,400	8,050	5,650	2,400	3,250
2ha	7,200	2,400	4,800	14,600	9,800	4,800	7,400
3ha	9,600	2,400	7,200	21,070	13,870	7,200	11,470
4ha	12,000	2,400	9,600	27,540	17,940	9,600	15,540
5ha	12,000	2,400	9,600	27,540	17,940	9,600	15,540
6ha	12,000	2,400	9,600	27,540	17,940	9,600	15,540
7ha	12,000	2,400	9,600	27,540	17,940	9,600	15,540

주: 농어민정년연금제의 상한선은 4ha이기 때문에 4ha 이상 농가에 대한 연금은 동일함

05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충남도는 청년농업인이 적고 고령농업인은 많아 청년층의 농가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
 - 충남도 농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젊은층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고령층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
- 둘째, 충남도내 신규농업인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지가 필요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농지확보가 쉽지 않음
 -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의 지역 내 유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는 실정임
 - 농지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기존 농가, 특히 고령농가의 농지에 대한 애착과 의존도가 크기 때문임
 - 따라서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신규농업인에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업인의 은퇴에 따른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령농업인의 은

퇴에 따른 획기적 보상체계를 마련되어야 함

- 고령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의 기회를 주기위한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 실행을 위해서는 은퇴농업인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충남도가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함

-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안)을 계획하고 있고 2023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안을 바탕으로 충남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안)은 기본연금(고정)+면적연금(면적에 따른 차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은 기본연금+면적연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본연금은 상향 차등화 지급하고 면적연금은 정부 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이럴 경우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은 정부안보다 면적에 따라 약 20~100%를 추가 지급해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제언

●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는 정부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과 연동해 실시하는 만큼 정부 정책동향의 면밀한 파악 필요

- 현재 정부는 경영이양직불금을 잠정 중단하고 2023년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금(안)을 준비 중에 있음. 정부 정책에 따라 충남도 농어민정년연금제의 실시도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 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의 지급 단가 상승이 필요

-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은 정부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보다 액수가 많지만 노후 최소생활비에 비해서도 크게 낮기 때문에 이후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어민정년연금액을 보면, 2인 가구 기준 1ha 농지소유 농가가 농지를 매도하고 연간 수령 받을 수 있는 농어민정년연금은 1,045(월 87.1만원)만원임.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2,340만원(월 195만원), 노후 적정생활비 3,216만원(월 268만원)⁶⁾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액수임
- 따라서 은퇴농어민의 안정된 소득 보장과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농어민 정년연금의 지급 단가를 단계별 상승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농어민에게 충분한 공감대와 이해도 제고 필요

- 정부는 지난 1995년 국민연금 특례를 만들어 농어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했으나 가입한 농어민의 비율은 크지 않음
- 그때 국민연금 내 한시적 특례조치를 통해 농어민연금에 가입한 농어민은 적은 납입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금혜택을 받았음
- 어떤 제도도 농어민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어 충남형 농어민정년연금제도 사업 초반에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정책의 취지와 수혜 내용을 잘 홍보한다면 이후 정책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부터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2019년 말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임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0.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2022.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미래전략 Insight 52호.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의 똑똑한 노후 이야기: 든든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 노후설계: 농지연금.(e-book)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2.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보고서

작성자: 박경철(kcpark@cni.re.kr)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